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2002년 9월 1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호 식  
장 관

♣ 대통령령 제17738호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양오염방지법(海洋汚染防止法)이 개정(2001. 9. 12. 법률 제6515호)되어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海洋環境改善負擔金)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算定基準) 및 부과·징수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2002년 9월 1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김 호 식

♣ 대통령령 제17739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이유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을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차령계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을 추가하여 동법에 의한 전원설비 등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4조제1항제2호)

나. 경유로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기간중에 있는 자동차 등 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4조제3항)

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수질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부칙 제2조)

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은 대강 기본부과금액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지역의 지역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전국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의 지역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다 낮은 시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영 별표 7 제3호 다목)

마. 자동차의 노후화 상태를 반영하는 차량계수의 단계를 9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등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차량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별표 7 제4호)

♣ 환경부령 제128호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됨에 따라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가.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

관의 직렬을 조정함(제3조제2항, 제3조의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2항).

나.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에 수질오염총량과를 각각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함(제8조 및 제14조)

다.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를 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 소속의 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생물다양성연구부 소속으로 이관함(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의 환경지도과를 폐지하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및 지역 협력과를 각각 설치하는 등 유역환경청 과의 편제 및 기능 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 등을 조정함(제 22조, 제 23조, 제 24조의2 및 별표 2).

마.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과를 폐지하여 자연환경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을 조 절함(제25조의2 및 제26조)

♣ 환경부령 제129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를 문서외에 전산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모범 등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규정을 현행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자원부령 제177호**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  
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가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14, 법률 제66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업무수행 계획서와 인력현황·조직체계도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정기관의 명칭·인정업무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으로 정하여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제도가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10조 내지 14조 및 제16조 내지 제20조 삭제).

♣ **국립환경연구원고 제2002-72호** ♣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 기기명칭 및 형식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면지)/CX-8AD

- 형식승인번호(년월일) : 제ATMSD - 1997 - 5호  
(1997. 4.25.)
- 승인내용중 변경사항
  - 구분 : ㉑ 측정범위
  - 변경전 : 0~1,000mg/m<sup>3</sup>
  - 변경후 : 0~100mg/m<sup>3</sup>
- 비고 : 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2. 8. 8.)

♣ 환경부공고 제2002-103호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4일  
환경부장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등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의 재정립의 필요성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공사 설립목적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으로 재정립함.

나. 공사의 사업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처리와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지원 및 수요촉진 사업으로 확대 조정하고,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 규정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수거사업 제한을 규정함.

라. 공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기타문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전화 : 2110-6955~7), FAX : 504 - 9289)

♣ 환경부공고 제2002-106호 ♣

2002년도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차추진계획공고

2002년도에 추진할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2년 10월 12일 12 : 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1. 추진과제

- 가. 지정공모과제 : 8개 단위사업(17개 중점과제)
- 중점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과제

단위 사업명	중점과제명
제	17개
측정분석 장비·장치 개발(1개)	측정분석장비·장치기술
환경친화형 물질(소재)·제품 개발(1개)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맑고 안전한 대기보전기술(3개)	대기오염물질·실내공기질 개선기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회수·배출저감기술 기후변화 원인물질 저감기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기술(1개)	폐기물의 감량·처리·처분·재활용기술
자연생태계·오염토양·지하수 보전·복원기술(2개)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오염토양·매립지 오염방지·복원기술
수질보전 및 하·폐수정화기술(3개)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 기술 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상하수도 관망 최적관리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1개)	배출량 저감 최적화 기술
통합환경관리기반 구축기술(5개)	생태환경 복원·관리기술 위해성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증진기술 친환경 오·폐수 관리기술 소음·진동 등 쾌적환경 개선기술 환경시책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2.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제안요구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e)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est.org)의 “공지사항”란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나. 신청기간 : 2002년 10월 12일 12:00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 또는 방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KIEST)

- 주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우 122-706)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2)3800-500
- 전 송 : (02)3800-699
- E-mail : kiest@kiset.org

♠ 환경부고시 제2002-129 호 ♠

굴뚝자동측정기특례인정대 상시설및시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이 필요한 시설 및 시간을

2002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 비고

1) 열사용시설의 경우 가동개시가 원료투입부터인 것은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등 연료연소의 경우에는 특례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측정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중 가동개시, 재가동 및 가동중 지시의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3배이상 인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출시설	가동(시간)	중지(시간)	가동시점	중지시점
1. 금속의 용융 및 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가. 소결로	6	4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황산제조시설(중질유분해CO소각보일러)	5	6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나. 염산화수(산처리 포함)시설	2	2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복합비료제조시설	3	3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3. 석규정제품제조시설				
가. 석유정제(석유화학 포함)시설중 가열시설	5	2	버너점화	버너소화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가. 유리용융로	8	3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나. 석고소성	2	4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다. 석회소성(수직로)	3	2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의 배출허용기준은 100mg/l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2002-132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성유지류)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 제2002-131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성유지류)방류수수질기준

1. 항목 : 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 5mg/l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찻집관로에

♣ 환경부고시 제2002-134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증명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기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기물의 배출, 운반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1. 주요골자

- 가. 전산처리기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명시
- 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사용대상자는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종합병원의 장 및 이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우선 지정하고, 새로이 사용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매년도 6월말까지 인계관리시스템에 그 명단을 공고함.
- 다. 사용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함.
- 라. 사용자는 인계관리시스템의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번호 전달 등 인수인계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마. 사용자가 등록한 전자인계서와 폐기물인계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류정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명시
- 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시범운영에 참가중인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용자로 인정

2.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생략

고시전문은 환경부공식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인터넷 인터넷 주소([www.wms-net.or.kr](http://www.wms-net.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환경부고시 제2002-135호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중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학과와 경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전공학과와경력)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전과정평가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국가 전과정목록분석(LCD) D/B구축작업에 참여한 기업 실무자의 전과정평가 수행경력의 인정기간은 D/B구축 작업에 참여한 실제기간만 인정
  - (2) 전과정평가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석사학위 취득자는 6개월의 실무경력 인정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환경관리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산업공정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하되, 분야별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1) 환경관리 실무경력

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많은 대기·폐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운영 경력 및 기업의

환경경영(환경친화상품 생산·설계 및 환경친화기업 업무담당자)경력으로 한정(단, 환경보건, 상·하수도, 자연환경 관련 경력 및 기본정책 수립 업무는 불인정)

나) ISO 14000 업무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기업관계자는 해당기업의 ISO 14000인증기간으로 하고, 인증심사원은 실제 수행한 인증심사기간으로 한정

(2) 산업공정관리 실무경력

가) 생산공정 관리분야의 시설 시운전, 시설운영, 생산공급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 (단, ISO 9000 업무의 경력은 산업공정 관리 경력으로 불인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2-5호 ◆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중(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 제2001-3호, 2001. 6. 18)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9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대상지역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 : 경기도 1시 3군 23읍·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동두천시	전역
양주군	회천읍, 백석읍(기산리 제외), 양주읍(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유영리, 광사리, 어둔리 제외), 남면 은현면, 광적면(비암리 제외)
연천군	전곡읍, 연천군(부곡리, 고문리), 청산면, 군남면(남계리), 미산면(동이리)
포천군	포천읍,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제외), 창수면, 영북면, 가산면, 신북면, 군내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관인면

-한탄강유역 : 강원도 1군 2읍

시·군명	대 상 지 역
철원군	갈말읍(신철원리, 지포리, 강포리, 문혜리, 군탄리), 동송읍(상노리)

2. 대상배출시설

①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②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의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의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의 경우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폐지고시)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 제2001-3호(2001. 6. 18.)는 이를 폐지한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2-6호 ♣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2-5호, 2002. 9. 3)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개정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1996. 12. 14)시행(1997. 1. 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상공부고시 제1993-93호(1993.

11. 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폐지고시)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 제2001-3호(2001. 6. 18.)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20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6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별표의 2002-3-2168란 다음에 2002-3-2169 내지 2002-3-218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2-3-2169	Siloxanes and Silicones, 3-[(2-aminoethyl)amino]propyl Me, di-Me, reaction products with polyethylene-polypropylene glycol Bu glycidyl ether [CAS No. 189354-73-2]
2002-3-2170	1,1,3,3-Tetramethylbutyl hydroperoxide [CAS No. 5809-08-5]
2002-3-2171	2,2' -[Methylenebis(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CAS No. 39817-09-9]
2002-3-2172	N,N' -(4-Methyl-1,3-phenylene)bis(1-pyrrolidinecarboxamide) [CAS No. 60006-11-3]
2002-3-2173	1,3-Bis(3-(2,3-epoxypropoxy)propyl)-1,1,3,3-tetramethyldisiloxane [CAS No. 126-80-7]
2002-3-2174	[총칭명] Hydrogenated propanoic acid polymer with hydroxylated cyclo hexane, isocyanated

	cyclohexane derivative, methyloxirane, substituted oxirane and polyethylene glycol ether
2002-3-2175	N-(2-Hydroxypropyl)isooctadecanamide [CAS No. 152848-22-1]
2002-3-2176	Ethenylbenzene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2-propenenitrile, N- (hydroxymethyl)-2-methyl-2-propenamide, 2-methyl-2-propenamide and 2-propenoic acid [CAS No. 부여 안됨]
2002-3-2177	3,4,5,6-Tetrabromo-1,2-benzenedicarboxylic acid, mixed esters with diethylene glycol and propylene glycol [CAS No. 77098-07-8]
2002-3-2178	Dipropylene glycol tert-butyl ether [CAS No. 132739-31-2]
2002-3-2179	[총칭명] Substituted pyridiyl pyridinium carboxylate lithium sodium salt
2002-3-2180	$\alpha$ -Hydro- $\omega$ -hydroxy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ethoxylated (C=12~14)-secondary alcs.-blocked [CAS No. 397250-73-6]
2002-3-2181	$\alpha$ -Hydro- $\omega$ -hydroxypoly(oxy-1,2-ethanediyl)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ethoxylated (C=12~14)-secondary alcs.-blocked [CAS No. 397250-80-5]
2002-3-2182	2-Oxepanone homopolymer reaction products with 12-hydroxyoctadecanoic acid, polyethylenimine and stearic acid [CAS No. 187041-34-5]
2002-3-2183	[총칭명]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methylglycidoxypropyl, methylglycol
2002-3-2184	(9Z,12R)-12-Hydroxy-9-octadecenoic acid homopolymer [CAS No. 27925-02-6]
2002-3-2185	Dichlorosilane polymer with ammonia [CAS No. 90387-00-1]
2002-3-2186	4-(Octadecylamino)-4-oxoisocrotonic acid [CAS No. 3077-27-8]
2002-3-2187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8)(hydroxyethyl)dimethyl, chlorides [CAS No. 85736-63-6]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기술인」을 읽으면 환경보전이 빨라집니다.**